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장 대관 내규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한다) 대관규정에 의거 재단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각종 시설 및 부속시설의 대관/대여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대관규정에 의거 재단의 승인을 받은 각종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관/대여 및 사용에 따른 원칙 등으로 한다.

제3조(대관신청 양식)

대관규정 제3조에 의거 대관신청에 필요한 대관 신청서, 부속시설사용 신청서, 공연계획서 등의 신청양식은 **[별첨1]**의 각 아트를 서식을 사용한다.

제4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재단은 정기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규정 제4조에 의거 대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단 직원 및 외부 심의위원의 5인
- ③ 수시대관의 경우 공연사업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자체 수시대관 심의를 한다.
- ④ 심의는 신청 건별 승인 가부제로 심의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신청단체와 작품의 수준 및 출연진의 전문성에 대한 사항
 2. 흥행성 유료공연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신청단체의 과거 대관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⑤ 재단이 지정한 기간 이외의 시설들의 사용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내부 심의를 거쳐 대표 이사가 결정한다.
- ⑥ 위원 중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삭제 2017.11.06)
3.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4. 재단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6. 기타 재단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7. 특정 종교의 포교, 예술성이 배제된 사설단체의 자체행사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신설 2017.11.06)

제6조(대관계약)

대관계약은 재단에서 정한 **[별첨2]**의 대관계약서 서식을 사용하며, 대관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

대관규정 제7조에 따른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공연시작 시간은 시작 전 관객 입장시간 30분을 기본으로 포함하여 대관규정 제7조 사용 시간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 ② 공연과 공연사이는 최소 1시간 이상 정리 및 준비·점검을 진행하므로 본 시간을 고려하여 공연시간을 집행해야 한다.
- ③ 모든 공연 및 행사는 사용시간 내 시작과 종료,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④ 부속시설(연습실)의 사용시간은 **[별첨5]**에 따른다.

제8조(사용료)

대관규정 제8조 2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해당시설의 상위 조례에 따른다.

- ① 화성아트홀과 누리아트홀은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② 반석아트홀과 야외공연장은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③ 부속시설(연습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별첨1]**과 **[별첨5]**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특례)

대관규정 제9조에 따른 수익성 높은 대관 및 공동주최의 경우 수익금 분할 방식 등으로 기준

사용료 보다 상향하여 차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대관규정 제10조 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사용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 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권 발행 및 매표)

대관규정 제16조에 의거 입장권의 발행 및 매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① 입장권은 유료입장권과 무료입장권(이하 “초대권”)으로 구분한다.
- ② 사용자는 입장권 발행 시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모든 입장권은 재단에서 확인 후 사용자의 책임 하에 사용한다. (개정 2017.11.06)[별첨3 삭제]
- ③ 사용자는 입장권을 임의로 추가 또는 초과 발행할 수 없으며, 재단에서 확인되지 않은 입장권의 경우 재단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재단이 확인되지 않은 입장권 및 초과 발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재단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06)
- ④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 1.취학 전 어린이 입장 불가(단, 공연 성격에 따라 연령제한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제한 연령 기재)
 - 2.공연 전 입장을 원칙(단,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
 - 3.공연장 내 음식물 ,카메라, 꽃다발 반입 금지
 - 4.공연장 안에서의 촬영 및 녹음 등 공연에 지장 및 초상권을 초래하는 행위의 금지
 - 5.공연장 안에서의 휴대폰 사용금지
- ⑤ 재단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용자와 협의하여 회당 1.5%(약10석)이상의 좌석을 유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안전관리 및 공연진행)

- ① 재단과 사용자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재단과 공연진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한다.
- ② 사용자는 모든 공연 및 행사의 기술스텝, 오퍼레이터, 진행요원(매표, 물품)등을 직접 준비 하여 운영해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스태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 시설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재단과 협의하여야하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3] 각 시설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승인을 득하지 않을 경우 대관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한다.

- ④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해 사용자는 재단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하며 재단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공연진행 등에 현격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한다.
- ⑤ 재단에서 인정하는 어린이 행사의 경우 사용자는 안전 및 질서, 청결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관 계약시 별첨으로 첨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1. 사용자 측에서는 안전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지정하여 진행한다.
 - 2. 2층 객석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사용을 금할 수 있다.
 - 3. 아트홀 내에 음식물반입은 일체 금한다.
 - 4. 아트홀의 피아노는 리사이틀 및 전문가용으로 어린이 공연 및 행사 진행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아노는 사용자가 직접 준비한다.
 - 5. 행사 종료 후 장내 청소 및 정리정돈은 사용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 6. 사전 협의되지 않은 홍보물은 설치 및 부착 할 수 없다. 공연장내의 홍보물을 비치·부착 하고자 할 경우 재단 승인을 득한 후 진행 할 수 있으며, 승인을 득하지 않은 홍보물은 제거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⑥ 화성시문화재단 공연장은 안전 및 원활한 공연관람을 위해 1인 1좌석을 원칙으로 한다.
- ⑦ 사용자는 공연기간 중 출입증을 패용해야 하며,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는 분장실 및 공연장무대 공연시작 전 객석 출입을 할 수 없다.
- ⑧ 촬영대관시 대관자는 극장의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훼손이나 손실 시 원상 대로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조정) 본 내규는 개정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화성아트홀 부대 부속시설 사용료

공 연 명	
대 관 일 자	

[부가세 별도]

	항 목	기준	사용료	비고
	덧마루	1회	30,000	설치 및 철거, 재료비 사용자 부담
	오케스트라피트	1회	30,000	
	승강무대	1회	30,000	
	댄스플로어	1회	100,000	설치 및 철거, 접착테이프 사용자 부담
	웨건	1회	30,000	
	연주용 기자재	1회	50,000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악기	피아노	1회	50,000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음향	유선마이크	1회	10,000	기본 5대(추가 시 1개당 5,000원)
	무선마이크	1회	20,000	기본 1개(배터리 사용자 준비)
	음향반사판	1회	40,000	
	음향콘솔	1회	20,000	
	빔 프로젝터	1회	100,000	운영요원 별도
	모니터 스피커	1EA	10,000	
조명	기본조명(화이트)	1시간당	20,000	연습 및 장치 설치 시 사용료의 50%
	PAR64	1EA	2,000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PAR46(1조 8EA)	1조	5,000	
	ELLIPSOID LIGHT	1EA	2,000	
	MOVING LIGHT	1EA	20,000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운영요원 별도
	FOLLOW SPOT 2KW	1회	10,000	운영요원 별도
	FOG-HAZER	1회	10,000	재료비 사용자 부담
녹음	녹화	1회	20,000	재료비 사용자 부담
	녹음	1회	20,000	
냉난방	냉방	1시간당	20,000	
	난방	1시간당	20,000	
방송	라디오	1회	100,000	
	텔레비전	1회	200,000	
	영화촬영	시간당	40,000	
연습실	대연습실	1회	50,000	공연 당일 연습사용시, 1일에 1회 요금 적용
	피아노	1회	20,000	사용시간은 공연장 대관시간 기준
기타	드라이아이스	1회	10,000	재료비 사용자 부담, 운영요원 별도
	강연대	1회	10,000	

반석아트홀 부대 부속시설 사용료

공 연 명	
대 관 일 자	

[부가세 별도]

구 분	항 목	기 준	사용료	비 고
무 대	덧마루	1회	30,000	설치 및 철거, 재료비 사용자 부담
	승강무대	1회	30,000	
	댄스플로어	1회	100,000	설치 및 철거, 접착테이프 사용자 부담
	연주용 기자재	1회	50,000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악 기	피아노	1회	50,000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음 향	유선마이크	1회	10,000	기본 5대(추가 시 1개당 5,000원)
	무선마이크	1회	20,000	기본 1개(배터리 사용자 준비)
	음향반사판	1회	40,000	
	음향콘솔	1회	20,000	
	빔 프로젝터	1회	100,000	운영요원 별도
	모니터 스피커	1EA	10,000	
조 명	기본조명(화이트)	1시간당	20,000	연습 및 장치 설치 시 사용료의 50%
	PAR64	1EA	2,000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PAR46(1조 8EA)	1조	5,000	
	ELLIPSOID LIGHT	1EA	2,000	
	MOVING LIGHT	1EA	20,000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운영요원 별도
	FOLLOW SPOT 1.2KW	1회	10,000	운영요원 별도
	FOG-HAZER	1회	10,000	재료비 사용자 부담
녹 음	녹화	1회	20,000	재료비 사용자 부담
	녹음	1회	20,000	
냉난방	냉방	1시간당	20,000	
	난방	1시간당	20,000	
방 송	라디오	1회	100,000	
	텔레비전	1회	200,000	
	영화촬영	시간당	40,000	
연습실	대연습실	1회	50,000	공연 당일 연습사용시, 1일에 1회 요금 적용
	피아노	1회	20,000	사용시간은 공연장 대관시간 기준
기 타	드라이아이스	1회	10,000	재료비 사용자 부담, 운영요원 별도
	강연대	1회	10,000	

야외공연장 부대 부속시설 사용료

공 연 명	
대 관 일 자	

[부가세 별도]

분	항 목	기 준	사용료	비 고
대	연주용 기자재	1회	50,000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음 향	유선마이크	1회	10,000	기본 5대(추가 시 1개당 5,000원)
	무선마이크	1회	20,000	기본 1개(배터리 사용자 준비)
	음향콘솔	1회	20,000	
	빔 프로젝터	1회	100,000	운영요원 별도
	모니터 스피커	1EA	10,000	
조 명	기본조명(화이트)	1시간당	20,000	연습 및 장치 설치 시 사용료의 50%
	PAR64	1EA	2,000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방 송	라디오	1회	100,000	
	텔레비전	1회	200,000	
	영화촬영	시간당	40,000	
연습실	소연습실	1회	30,000	공연 당일 연습사용시, 1일에 1회 요금 적용

누리아트홀 부대 부속시설 사용료

공 연 명	
대 관 일 자	

[부가세 별도]

구 분	항 목	기 준	사용료	비 고
무 대	덧마루	1회	30,000	설치 및 철거, 재료비 사용자 부담
	댄스플로어	1회	100,000	설치 및 철거, 접착테이프 사용자 부담
	연주용 기자재	1회	50,000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악 기	피아노	1회	50,000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음 향	유선마이크	1회	10,000	기본 5대(추가 시 1개당 5,000원)
	무선마이크	1회	20,000	기본 1개(배터리 사용자 준비)
	음향반사판	1회	40,000	
	음향콘솔	1회	20,000	
	빔 프로젝터	1회	100,000	운영요원 별도
조 명	모니터 스피커	1EA	10,000	
	기본조명(화이트)	1시간당	20,000	연습 및 장치 설치 시 사용료의 50%
	PAR64	1EA	2,000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PAR46(1조 8EA)	1조	5,000	
	ELLIPSOID LIGHT	1EA	2,000	
	MOVING LIGHT	1EA	20,000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운영요원 별도
	FOLLOW SPOT	1회	10,000	운영요원 별도
FOG-HAZER	1회	10,000	재료비 사용자 부담	
녹 음	녹화	1회	20,000	재료비 사용자 부담
	녹음	1회	20,000	
냉난방	냉방	1시간당	20,000	
	난방	1시간당	20,000	
방 송	라디오	1회	100,000	
	텔레비전	1회	200,000	
	영화촬영	시간당	40,000	
연습실	소연습실	1회	30,000	공연 당일 연습사용시, 1일에 1회 요금 적용
	피아노	1회	20,000	사용시간은 공연장 대관시간 기준
기 타	강연대	1회	10,000	

사. 순수공연이 아닌 행사 등은 준수사항을 별첨으로 추가 할 수 있다.

아. “을” 은 공연(행사)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 “을” 은 (필요에 따라)원활한 공연진행 및 사고방지를 위해 유보석(4석)을 재단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6. “을” 이 계약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본 계약서와 화성시문화재단 동탄복합문화센터 공연시설 사용료 규정에 관한 해석이 “갑” 과 “을” 이 서로 다를 경우 “갑” 의 해석에 따른다.

2016년 월 일

(갑)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재)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 (인)

(을) : 단체주소(○○○)

단체명(○○○)

대표자 ○○○ (인)

[별첨] 계약서

(단위 : 원)

구분	항목	기준	단가	신청단위	산출요금
총 계					
기본 시설사용료	휴일 오후대관 2016.03.26(토)				
	휴일 오후추가대관 2016.03.26(토)				
	휴일 야간대관 2016.03.26(토)				
부속 시설사용료	덧마루				
	음향반사판				
	스타인웨이피아노				
	음향콘솔				
	무선마이크				
	무대조명				
	대연습실				
	피아노				
소 계					
부가가치세					

산출인 : 공연사업팀 ○○○ (인)

확인 : ○○○○○(단체명) 대표 ○○○ (인)

